⊙ 환경처고시제91-6호

환경보전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규제고시(환경처고시 제90-3호, '90. 1.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1년 2월 4일

환경처장관

연료사용규제고시중개정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이 고시중 제7조(저유황유의 사용)의 규정은 비상사태로 인한 정부 석유비축물량을 방출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환경처고시제91-7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1년 2월 8일

환경처장관

신고대상에서제외되는화학물질

1. 환경처장관이 발간하는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화학물질

2. 이 고시 시행전에 이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이라는 사실을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화학물질

가.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또는 수입된 화학물질

나. 다른나라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 규정에 준하는 유해성심사의 결과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화학물질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환경처고시제91-8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오수정화시설 설치제외지역을 추가 고시합니다.

1991년 2월 7일

환경처장관

오수정화시설설치제외지역지정

1. 제외대상지역

폐수종말처리장	행정구역	면적(ha)	비 고
논공공단 폐수 종말처리장	경북 달성군 논공면 북동, 남동 일부	464.3	○상공부고시 제87-13호('87. 5. 4.)에 의하여 공단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구별용도지역 계획 면적 중 주거지역 일부

⊙ 환경처고시제91-9호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청별 관할지역내 폐수처리업중 폐수수탁처리업에 대한 허가정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1년 2월 8일

환경처장관

폐수처리업중폐수수탁처리업허가정수

○폐수수탁처리업 허가정수

계	지방환경청별 관할지역내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원주
25	9	6	3	3	2	2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처고시 제 91-11호

환경경정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환경기술감리대상시설 및 신청절차(환경처 고시 제89-10호, '89.6.2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91년 2월 28일

환경처장관

◇ 개정취지 및 주요개정내용

▲개정취지

환경보전법 분법화에 따른 문구수정 및 기술감리대상시설을 축소조정하여 기술감리효율을 증대시키고, 여유인력을 환경기술지원단에 활용코자함.

▲주요개정내용

○ 기술감리대상시설 축소 : '90년도 총 2,764건 중 1,140건(약 41%)

- 대기분야(약 750건) : 단순 반복적이고 이미

환경기술감리 표준화 시행으로 지방청 등 허가담당자, 사업자, 방지시설업체 등에서 기술축적이 되었다고 예상되는 시설

- 단순열공급시설
- 금속표면처리시설
- 분쇄, 선별, 연마 등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먼지 배출시설
- 아스콘제조시설

— 소음진동분야(약 160건) : 소음진동 동력합계 상향조정

- 기존 500마력 →1,000마력

— 폐수분야(약 230건) : 기 환경기술감리를 받은 시설의 변경사항 제외

- 500m^3/일 미만 증가

— 기타 대기환경보전법의 변경신고대상이 상향조정으로 일부 감소

- 기존 변경신고대상 20%→50% 증설시

○ 일부 기술감리대상시설 추가

— 방지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을 설치시

- 개별법에 인정토록 되어 있음.

— 소각보일러의 그 사용연료를 변경하거나 연료의 구성비율을 변경시

- 개별법에 변경허가로 됨.

○ 환경보전법 분법화에 따른 문구수정

○ 개별법 시행령에 의한 지방청 업무위임에 따른 신청서류 조정

— 공동방지시설 설치 승인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승인

— 자가처리자 지정 등

환경기술감리단의 환경기술감리대상시설 및 신청절차 개정고시

1. 환경기술감리대상시설

구 분	환경기술감리대상시설
가. 공통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내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다만, 소음은 "다"에 의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호,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호, 소음진동규제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고자 하는 대상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제12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소음진동규제법 제11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의 대상시설 4.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 소음진동규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대상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ㄱ. 대기의 경우 허가받은 동일종류의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50(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은 100분의 30)미만 증설하는 경우 ㄴ. 수질의 경우 대상시설을 변경하여 1일 최대 폐수배출량의 증가량이 50m^3 미만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은 1일 30m^3 미만)인 경우 ㄷ. 소음·진동의 경우 다. 소음·진동 제3호의 대상시설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방지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나. 대기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4종 이상 사업장의 신설·변경허가 대상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중 소각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상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상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감리대상에서 제외한다. 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중 일반보일러 ㄴ. 단순 열공급시설이 아닌 배출시설로서 전기 및 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하거나 액체연료를 연소시켜 배출되는 배출가스량의 증가량이 5,000 m^3/시간 미만의 대상시설 ㄷ. 유기고분자 화합물의 단량체를 가열하여 압출 또는 성형하는 대상시설 ㄹ. 화학제품제조시설중 화학반응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혼합, 혼화 등에 의해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시설 ㅁ.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ㅂ. 분쇄, 선별, 제재, 도정, 혼합, 저장, 계량, 연마, 포장, 탈사시설 등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먼지발생 대상시설 ㅅ. 아스콘 제조시설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변경 신고 대상시설 ㅈ.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기히 환경기술감리를 득한 대상시설과 동일한 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의 대상시설 ㅊ. 기히 환경기술감리를 득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대상시설 ㅋ.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에 의하여 방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
다. 소음·진동	1.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소음 배출시설중 동력합계 1,000마력 이상 또는 동종시설 150대 이상 공장의 소음배출시설. 다만, 1회이상 증설되는 시설의 누계가 상기의 동력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진동배출시설중 동력합계 1,000마력 이상 공장의 진동배출시설. 다만, 1회이상 증설되는 시설의 누계가 상기의 동력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구 분	환 경 기 술 감 리 대 상 시 설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ㄱ.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내의 대상시설 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중 공업단지내의 대상시설 ㄷ.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변경신고 대상시설 ㄹ. 공업용 재봉기 ㅁ.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시설
라. 폐수	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4종 이상 사업장의 신설, 변경허가 대상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ㄱ.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시설 ㄴ. 대상시설을 변경하여 1일 최대 폐수배출량의 증가량이 50m³ 미만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은 30m³ 미만)인 경우 ㄷ. 기히 환경기술감리를 받은 대상시설을 변경하여 1일 최대 폐수배출량의 증가량이 500m³ 미만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은 100m³미만)인 경우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병합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오·폐수 병합처리시설) 3.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 적정처리자 (자가처리자)로 지정받기 위한 대상시설 4. 수질오염 방지공법상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하기 위하여는 희석처리가 필수적인 시설 5.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법)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대상시설. 다만, 대상시설을 변경하여 1일 최대 폐수배출량의 증가량 이 50m³ 미만(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은 1일 30m³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주 1) 상기 대상시설중 환경처장관이 인정한 모범업소에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 (기존 동형시설)은 제외한다.

주 2) 나. 대기 4호의 금속표면처리시설에 포함되는 배출시설은 산·알카리 처리시설, 탈지시설, 도금시설, 화성처리시설, 도장시설, 건조시설임.

2. 환경기술감리신청 구비서류

환경기술감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기술감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구비서류 3부를 작성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기술감리신청서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를 위한 기술감리 신청

1) 사업개요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3) 공정도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다만, 소음·진동은 소음·진동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5)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도면 (다만, 폐수 및 소음·진동배출시설의 배출시설 도면은 제외)
7) 폐수배출배관도(다만,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내역서
9) 방지시설 등록업 관계서류 및 기타 참고자료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호,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호, 소음·진동규제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 의무면제 신청

1) "가"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위한 기술감리 신청서류중 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제외한 신청서류
2)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2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소음·진동규제법 제11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의 기술감리신청

1) "가"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위한 기술감리 신청서류중 9)을 제외한 관계서류

라.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 소음·진동규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술감리 신청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내역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적 2만 5천분의 1지형도)
2)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 설치도면 (또는 연결관 설치 도면) 및 내역서

5)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6) "가"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위한 기술감리 신청서중 위 1)-5)를 제외한 관계서류

마.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자(자가처리자)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감리신청

1) "가"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위한 기술감리 신청서류중 방지 시설에 관한 서류를 제외한 신청서류

2) 자가처리에 따른 처리공정 및 그 도면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 (새로운 기술감리대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에 의하여 새로이 기술감리대상시설로 지정된 대상시설중 이 고시 시행전에 접수된 배출시설 설치허가 서류는 기술감리대상시설에서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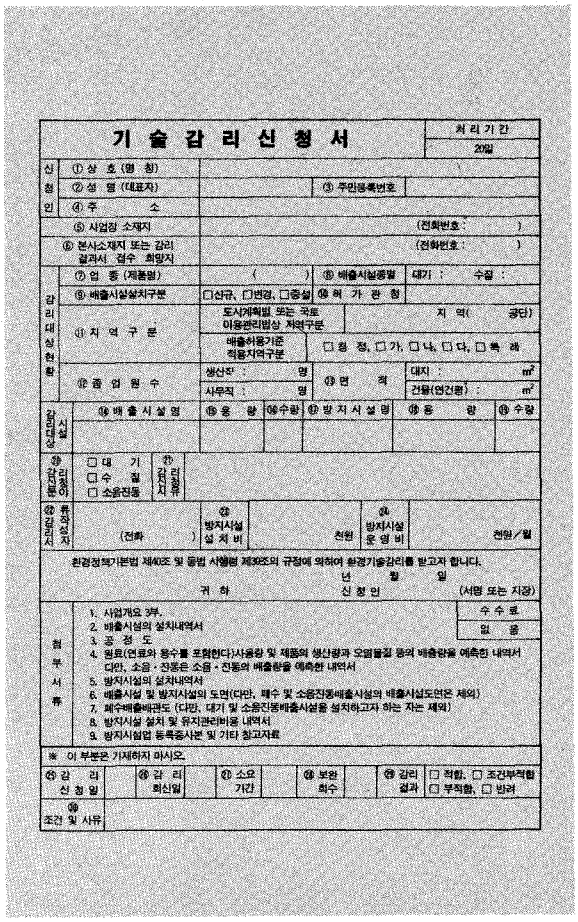

기 술 감 리 신 청 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상 호 (명 칭)		
	② 성 명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 본사소재지 또는 감리결과서 접수 희망지	(전화번호 :)	
감리대상현황	⑦ 업 종 (제품명)	( ) ⑧ 배출시설종별	대기 : 수질 :
	⑨ 배출시설설치구분	□신규, □변경, □증설 ⑩ 허 가 관 청	
	⑪ 지 역 구 분	도시계획법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지역구분	지 역 (공단)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구분	□청 정, □가, □나, □다, □특 례
	⑫ 종 업 원 수	생산직 : 명 ⑬ 면 적	대지 : ㎡
		사무직 : 명	건물(연면적) : ㎡
감리대상시설	⑭ 배 출 시 설 명	⑮ 용 량 ⑯ 수량	⑰ 방 지 시 설 명 ⑱ 용 량 ⑲ 수량
⑳ 감리희망분야	□ 대 기 □ 수 질 □ 소음진동	㉑ 감리시기	
㉒ 감리담당자	(전화)	㉓ 방지시설 설 치 비	천원 ㉔ 방지시설 운 영 비 천원/월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감리를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귀 하 신 청 인 (서명 또는 지장)

첨부서류
1. 사업개요 3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3. 공 정 도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다만, 소음·진동은 소음·진동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5.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도면(다만, 폐수 및 소음진동배출시설의 배출시설도면은 제외)
7. 폐수배출배관도 (다만,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내역서
9. 방지시설업 등록증사본 및 기타 참고자료

수수료: 없 음

※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시오.

㉕ 감 리 신 청 일		㉖ 감 리 회 신 일		㉗ 소 요 기 간		㉘ 보 완 회 수	㉙ 감리결과 □ 적합, □ 조건부적합 □ 부적합, □ 반려
㉚ 조건 및 사유							

'91년도 경력 및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사는 탈수기전문제조업체로써 91년도 사세확장에 따라 창의적이고 유능한 영업 경력사원 및 신입사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직책	모집분야	모집인원	제출서류	접 수 방 법
과장	영업	○명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경력사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1통 -졸업증명서 1통	-개별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91년 3월 31일까지 소인 유효
신입	영업	○명		
신입	기계시운전 및 A/S	○명 (운전면허소지자우대)		

(株) 裕泉엔지니어링

문의처 : 서울 구로구 오류동 135-94 (유천B/D)
TEL : (02) 686-2576 (代) ~80